

사업참여 길라잡이

# 안전동행 지원사업

※ 본 설명자료는 「'25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료입니다.

- 사업 신청 전 공고문을 통해 사업별 지원자격 및 지원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에서 설명되어 있는 신청 화면과 실제 신청 화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TEL : 1644-4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목 차

|                       |            |
|-----------------------|------------|
| I. 사업주 준수사항           | 1          |
| II.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 및 절차 | 2          |
| III. 절차별 진행 방법        | 3          |
| 1. 사업신청               | 사업장 3      |
| 2. 예비선정               | 공 단 10     |
| 3. 서류·현장평가            | 사업장 공 단 13 |
| 4. 보조지원 결정심사 및 결과통보   | 공 단 14     |
| 5.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장 공 단 16 |
| 6. 선금 지급              | 사업장 공 단 19 |
| 7. 공정 개선              | 사업장 21     |
| IV. 투자완료 확인           | 23         |
| 1. 투자완료 확인요청          | 사업장 23     |
| 2. 투자완료 확인평가(서류·현장)   | 공 단 27     |
| 3. 보조금 지급             | 공 단 29     |
| V. 사후관리               | 사업장 공 단 31 |
| VI. 사업취소              | 사업장 32     |
| VII. 사업장 정보변경 신청      | 사업장 34     |
| VIII. FAQ             | 39         |

#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참여 길라잡이

## I 사업주 준수사항

※ 안전동행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업 신청 전 아래의 사업주 준수 및 이행 사항을 반드시 읽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 준수 및 이행 사항 〉

1. (산재보험 유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을 사업 신청 이전부터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완납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지원조건 준수) 사업 신청 전 사업공고문 상의 사업별 지원 자격 및 보조금 지급기준 등의 지원조건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손실방지를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수수료 발생
3.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또한 불가합니다.
  - ① 사업 기간 내 산재보험이 소멸되거나 유지되지 않은 경우
  - ②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획(견적서 등)과 상이한 기계·기구·설비 또는 공정을 도입하는 경우
  - ③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 ④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공정을 도입하는 경우
  - ⑤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투자완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⑥ 신청 서류 등의 미비에 따른 공단의 보완사항에 대해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⑦ 참여제한 조치가 적용된 사업장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⑧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⑨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⑩ 공고 상 참여제한 및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 및 확인되는 경우
  - ⑪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보조금 반환)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5. (부정수급 금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은 물론 추가적인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시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조치 적용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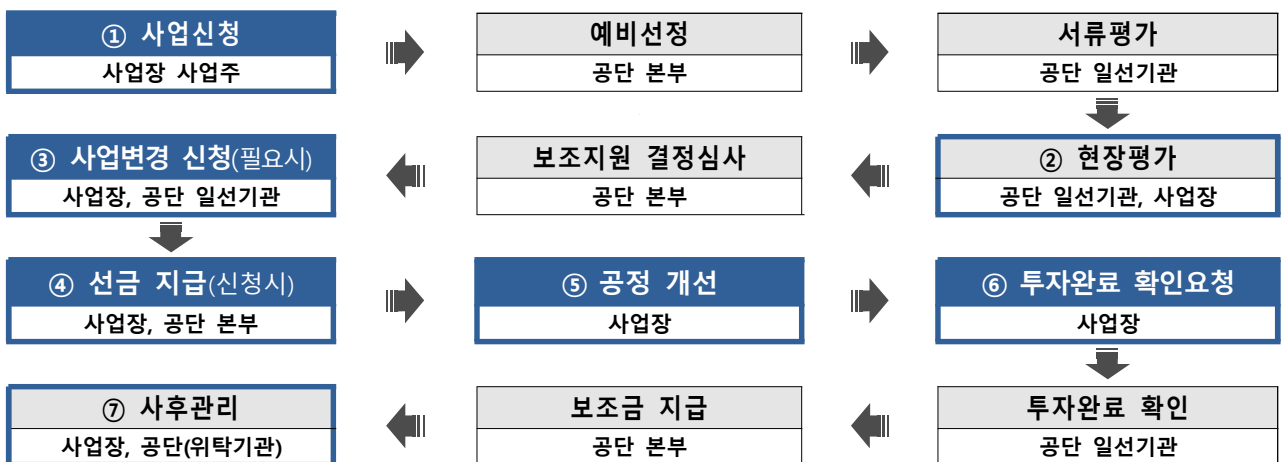
##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 및 절차

### □ 사업개요

-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 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 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 □ 사업 흐름도

■ 사업장 수행  
■ 공단 수행



### □ 참여 사업장 이행 주요절차

- ① **[사업신청]**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서 신청 정보 기입 및 필요 서류 첨부하여 사업 신청  
※ 제작·판매업체 대리 신청 불가하며, 대리 신청 확인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
- ② **[현장평가]** 공단(일선기관)에서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업장 현황 및 개선 대상 공정·설비 보유여부, 설치장소 등 확인
- ③ **[사업변경 신청(필요시)]** 최초 제출했던 모델, 제작·판매업체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 및 공단 승인 필요(서류 구비하여 종합지원시스템 신청)
- ④ **[선금 지급(신청시)]** 보조결정 금액의 70% 범위 신청 가능(서류 구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⑤ **[공정개선]**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사업장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계·설비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공정개선 실시
- ⑥ **[투자완료 확인요청]** 투자완료 기간 내 공정 개선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장요청 시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
- ⑦ **[사후관리]**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연도의 말일(12월 31일)까지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등 확인**(지원 품목을 적정히 유지·관리되지 않거나 부정수급 시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 환수조치)

### III 절차별 진행 방법

#### 1. 사업신청 사업장

##### 단계 설명



##### ○ (사업신청) 사업장

- **(신청방법)** 신청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을 신청합니다.
  - ※ 제작·판매업체 대리 신청 불가하며, 대리 신청 확인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
  -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이 된 후,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에 대해 공단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단, 예산 소진시 신청 불가)
- **(점수부여)** 사업장에서 신청한 정보에 따라 예비선정 점수가 자동 부여됩니다.

#### □ 신청 사업장 이행사항

- 신청 사업장(사업주)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 회원 가입 후 아래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종합지원시스템 사업신청 중 설비 구입비 입력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 또는 음영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필수 제출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산재완납증명원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①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②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 ③견적서(직접 수입물품의 경우 offer sheet 등) 1부(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 시, 표준모델을 적용한 현장 도면 제출)
- ④사업계획서 1부(종합시스템 자료실 내 양식 활용, 개선계획 및 기존 설비·공정 사진 등 포함)

##### < 해당 시 제출 서류 >

- 뿌리기업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주조·소성·표면처리 뿌리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1부(알차전자·아차전자 제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內 3개 분야 미기재 사업장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원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및 협력업체 증빙서류 1부
-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화재·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도입인 경우에 한함)
-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서 1부(상생협력사업 연계지원의 경우에 한함)
- ⑤원청지원 예정확인서 1부(원청 직접지원의 경우에 한함)
- ⑥안전인증 관련 서류(S마크 안전인증 설비 도입에 따른 가점 신청시 반드시 제출)
- 위험성평가 인정서(「25년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에 한함)

- ①, ② 동의서 및 약약서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시스템 사업신청 시 동의절차에 따라 같음
- ③ 제작·판매업체 직인 날인 및 옵션사항 기재 필요(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④ 기존 및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의 설비 사진, 위험성평가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 ※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업장 설비 또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⑤ 원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청에서 작성하여 직인 인영(원청 인감증명 첨부)
- ⑥ 안전인증품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S마크 안전인증 설비 도입에 따른 가점 신청시에는 반드시 제출
  - ※ 모든 가점대상에 대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 지원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STEP 1 < 회원가입 >

① 종합지원시스템 → ② 회원가입 → ③ 약관동의 → ④ 개인 실명인증\*

\* 휴대폰 인증받기 또는 아이핀 인증받기 중 선택

### STEP 2 < 기관정보 선택 >

① 구분 팝업창 선택\* 및 해당 번호 입력 → ② 사업장 검색 → ③ 사업장 선택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검색되지 않습니다.

### STEP 3 < 사용자 정보 입력 >

① 사용자정보 입력 → ② 중복확인 → ③ 사업장구분\* 선택 → ④ 확인

\* 회원가입 시, 사업장 구분 선택은 "투자기업"을 선택하고 → 사업주 명의로 회원가입  
\* 사업 신청시 사업주 본인 외 대리 신청 불가

## < 사업 신청 방법 >

### STEP 1 < 과제신청 >

① 로그인 및 안전동행 지원사업 선택 → ② 사업관리(동행) → ③ 과제신청

### STEP 2 < 공고선택 >

① 사업목록 → ② 수행사업 및 공고명 확인 → ③ 신청

### STEP 3 < 소속기관 조회 >

① 구분 선택(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 기입 → ③ 조회



#### STEP 4 < 소속기관 선택 >

① 조회 후 사업장 정보 확인 → ② 해당 사업장\* 선택

\* 선택한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설비 설치소재지가 결정되므로 사업장관리번호를 정확히 확인 바랍니다.

#### STEP 5 < 기 지원이력 확인 >

① 사업장 기 지원이력 및 지원한도 확인 → ② 내용 확인 후 신청

#### STEP 6 < 사업장 정보 입력 >

① 사업장 정보 입력 → ② 사업장 및 담당자 정보 기입 후 확인 → ③ 저장



## STEP 7 < 사업의 필요성 >

### ① 사업의 필요성 입력

사업관리(동행)

과제신청

신청

사업변경

투자완료 확인요청

사업취소

사업장정보변경신청

과제신청

신청기본정보

사업비내역

첨부분서

신청사업장정보

신청기본정보

신청사업

|           |                                        |      |      |
|-----------|----------------------------------------|------|------|
| 사업명       |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신청구분 | 격차완화 |
| * 신청사업장명  |                                        |      |      |
| 신청번호      |                                        |      |      |
| 사업기간      | 보조금 지원지급 결정일로부터 4개월(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 |      |      |
| * 사업의 필요성 | 내용을 간단히 요약기술하세요.                       |      |      |

## STEP 8 < 개선·현행 공정 정보 입력 >

### ① 설비 구분 선택 → ② 공정 정보 입력 → ③ 가점항목 업로드(해당 시) → ④ 저장

\* 가점항목 오입력, 허위입력 등 예외없이 부적합(취소)처리되므로 신중하게 선택 바랍니다.

개선·현행공정

①

설비 구분

프레스

전반기

절곡기

냉간단조기(포밍기)

CNC선반

CNC밀링

레이저 가공기

선입용무로

무인 자동공정장치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출성형기

도금설비

도장설비

주조기(다이캐스팅 기 등)

용해로

서플라이공용기계

고압형 액체가공용 기계

원료공급기

확재목발액발설비

작업장 안전디자인

기타

②

\* 공정설명

○

\* 문제점

○

\* 생산능력 (현재 개선 희망 범위)

○

(필강 생산량)

\* 생산능력 (개선 진행 후 예상)

○

(필강 생산량)

\* 주요생산품

○

\* 매출액(전년도)

1

\* 기대효과

○

③

[5마크 인증]

□ 5마크 인증 설비 도입

첨부분서

[5마크 인증서]

[첨부분서 업로드]

[작업장 안전디자인]

□ 작업장 안전디자인 해당공정해당 체크

첨부분서

[작업장 안전디자인 적용 증명자료]

[위험성평가 이행]

□ 위험성평가 이행

□ 25년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후 이행 및 이행

첨부분서

[25년 위험성평가 이행 증명자료]

※ 가점항목 오입력으로 인한 선정점수 변경사항 발생시 예비신청 되었더라도 예외 없이 서류평가 단계에서 부적합(취소) 처리 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④

저장

취소

## STEP 9 < 사업비 내역 >

① 설비 구입내역 입력 → ② 신청 사업비 확인 → ③ 제작·판매업체 선택 → ④ 저장

**과제신청**

1 신청사업장정보      신청가능금액      **사업비내역**      첨부문서

**1 설비 구입비**  
(단위 : 원 / VAT 별도)

| 구분          | 품명 | 모델명 | 제/외산 | 규격 | 단가 | 수량 | 계 | 공급업체선택 | 설비<br>추가 | 삭제 |
|-------------|----|-----|------|----|----|----|---|--------|----------|----|
| PC(노트북) *1  |    |     | 선택   |    |    |    |   | 선택     | 추가       |    |
| PC(데스크탑) *1 |    |     | 선택   |    |    |    |   | 선택     | 추가       |    |

합계

**2 신청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 VAT 별도)

| 구분        | 총 소요금액 | 환산금액 | 신청사업비<br>부담금 | 합계 | 첨부파일<br>해당금액 | 첨가할<br>첨부파일 |
|-----------|--------|------|--------------|----|--------------|-------------|
| 신청 사업비 금액 | 0      | 0    | 0            | 0  | 0            | 0           |

※ 신청 사업비 금액 : 1,000원 미만 일  
은 100원 미만(부담금)으로 환산된 후 부담금 지급 가능

※ 환산금액 = 공인매사 인정하는 금액  
※ 장비자의 매입금액 = 부담금 = 원가정리부담금  
※ 부담금 = 원가정리 X 0.3 (100,000,000원 한도)  
※ 원가정리부담금, 원가정리사 등은 해당에 대한 부담금(총소요금액 및 설계금액)에 따라 변동  
※ 신청사업비 총소요금액 = 부담금  
※ (부담금) = (부담금) + (부담금) + (부담금)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공급업체 선택**      **공급업체 선택**      ※ 공급업체가 가장 많은 공급업체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명(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
|---------|---------|
| 삼성      |         |
| 현대      |         |

※ 공급업체의 선택은 해당 업체에 한하며, 신청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장**      **취소**

## STEP 10 < 첨부문서 제출 및 선금급 신청 >

① 첨부문서 업로드 → ② 선금 지급\* 신청(해당 시)

\* 사업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시 선금 지급 가능

**첨부문서**

| ① 항목                                            | 양식 | 허용파일                                                             | 필수여부 | 첨부파일       |
|-------------------------------------------------|----|------------------------------------------------------------------|------|------------|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br>사업자등록증영원 1부                      |    | hwp, pdf, docx, pptx, xl<br>sx, jpg, jpeg, gif, png, z<br>p, egg | ○    | <b>업로드</b> |
| 산재예방교육명원 1부<br>(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hwp, pdf, docx, pptx, xl<br>sx, jpg, jpeg, gif, png, z<br>p, egg | ○    | <b>업로드</b> |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br>(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hwp, pdf, docx, pptx, xl<br>sx, jpg, jpeg, gif, png, z<br>p, egg | ○    | <b>업로드</b> |
| MSDS, 작업환경측정보고서 1부<br>(화재예방예방설비 신청시)            |    | hwp, pdf, docx, pptx, xl<br>sx, jpg, jpeg, gif, png, z<br>p, egg | ○    | <b>업로드</b> |
| 견적서 1부 (제작공사용인 경우<br>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 hwp, pdf, docx, pptx, xl<br>sx, jpg, jpeg, gif, png, z<br>p, egg | ○    | <b>업로드</b> |
| 사업계획서 1부 (개선계획 및<br>기존 설비공정 사진 등 포함)            |    | hwp, pdf, docx, pptx, xl<br>sx, jpg, jpeg, gif, png, z<br>p, egg | ○    | <b>업로드</b> |
|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서<br>1부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br>참여에 한함) |    | hwp, pdf, docx, pptx, xl<br>sx, jpg, jpeg, gif, png, z<br>p, egg |      | <b>업로드</b> |
| 원정지원 예정확인서 1부<br>(상생분야 직접지원에 한함)                |    | hwp, pdf, docx, pptx, xl<br>sx, jpg, jpeg, gif, png, z<br>p, egg |      | <b>업로드</b> |

**선금 지급 신청**

② 신청 여부      ☐ 신청      신청 가능금액      원 미만

※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추가 서류 제출 시 선금 지급 가능

## STEP 11 < 예비선정 접수 >

- ① 예비선정 접수 확인 → ② 정부정책 부합도 및 가점 적용사항 확인 →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 → ④ 저장 및 최종제출

예비선정 지원접수

①

총점

5.0

정부정책 부합도 및 가점 적용사항

②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24년 12월 31일 기준)

V

선재보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24년 공학 통계 기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단지·일주 사업장('24년 11월 30일 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외국인 근로자 1명: 1점, 최대 5점)

최초신청 사업장(안전투자혁신사업, 안전동행지원사업 결정 이력이 없는 사업장)

5마크 인증서 제출 사업장

작업장 안전디자인 적용

위험성평가 인정('25.)고 이후 신청하여 인정받은 사업장에 한함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③

① 본인(사)는 안전동행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개인 (기업)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본인(사)는 귀 기관이 신용정보(법인 및 개인식별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금융질서문란자 규제여부,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정보 등)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 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④

최종제출

저장

사업계획서

목록

## STEP 12 <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등 동의 후 제출 >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중소기업 자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동의 후 제출  
\* 미동의 시 사업 신청 불가,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 필요시 사업 취소 후 재신청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참여 사업명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설비는 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용자·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추후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됨을 확인합니다.

· 동일 설비에 대해 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또는 동일 설비에 대해 본 사업 보조금과 타기관 용자금 합계가 설비 구입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동의

☐

년

월

일

대표 :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동의 후 다음

- 9 -

## 2.

## 예비선정

### 공단 본부

#### 단계 설명



#### ○ (예비선정) 공단 본부

- **(대상자 선정)** 사업장에서 사업 신청 시 예비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예비선정 점수가 자동 부여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 본부에서는 공단 일선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점수순으로 예비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단, 상생지원 분야는 최우선 선정하되 예산범위 초과시 고득점순)
- **(선정결과 통보)** 공단 본부는 예비 선정된 사업주에 SMS 문자와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정 결과와 향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 □ 공단 이행사항

- 공단은 사업장 위험도, 산재보험가입기간, 정부정책 부합도 등을 바탕으로 예비선정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 순으로 예비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 예비선정 기준 >

| 구 분  | 계    | A. 사업장위험도      | B. 산재보험가입기간           | C. 정부정책 부합도*         | D. 가점**               |
|------|------|----------------|-----------------------|----------------------|-----------------------|
| 점수   | 110점 | 50점            | 30점                   | 20점                  | 최대 10점                |
| 확인방법 |      | 빅데이터예측 고위험 사업장 | 산재보험 성립연월 기준 점수 차등 부여 | 정부정책 부합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재정지원 수혜 사업장 확대를 위한 가점 |

\*정부정책 : ①위험성평가 인정(5점), ②5인미만(5점) ③산단대개조 산업단지 입주기업(5점) ④외국인 근로자 다수보유(5점)

\*\*가점: ①최초신청(4점), ②S마크 인증품 도입(3점) ③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3점) ④ '25년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5점) ⑤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3점)

③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보행안전(2종), 소방안전(2종) 모두 도입하여야 가점 부여

④ (고시개정내용) 인정 점수 90점 이상,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 등

⑤ 신청일 기준, 공단(위탁 포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24년 이후)을 1회 이상 받은 사업장

- **(결과 통보 및 확인)** 예비선정 결과는 해당 사업주의 연락처로 SMS 문자 통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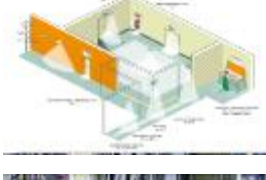
#### < 예비선정 대상자 통보 내용 >

- ▶ 선정결과(미선정 포함)
- ▶ 서류·현장평가 진행기간, 실시사항 등

#### □ 사업장 이행사항

- SMS 문자를 수신한 사업주는 반드시 종합지원시스템(마이페이지)에서 통보 결과와 향후 절차를 확인하시고, 안내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 작업장 안전디자인 표준 디자인 >

| 구분                 | 표준화 품목       | 참조 이미지                                                                                                                                                                                                                                                                                                                                                                                                                                                                                                               |
|--------------------|--------------|----------------------------------------------------------------------------------------------------------------------------------------------------------------------------------------------------------------------------------------------------------------------------------------------------------------------------------------------------------------------------------------------------------------------------------------------------------------------------------------------------------------------|
| 보행안전 표준화<br>(가점대상) | 보행로 표시       |       |
|                    | 지게차, 차량 등 통로 |                                                                                                                                                                                                                                                                                                                                               |
| 소방안전 표준화<br>(가점대상) | 비상구 표시       |                                                                                                                                                                                                                                                                                                                                             |
|                    | 비상유도사인       |                                                                                                                                                                    |
| 위험구역 표준화           | 위험구역 표시      |                                                                                                                                                                                                                                                                                                                                             |

○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보행안전(2종), 소방안전(2종)을 모두 도입하는 경우에 가점(3점) 부여

※ 세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종합지원시스템-알림/참여사항-공지사항」 별도 게시 예정(1월 중)



## < 예비선정 대상 결과 확인 방법 >

### STEP 1 < 마이페이지 - 선정 결과 확인 >

① 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마이페이지 → ② 선정 결과 확인

#### 나의과제 - 사업장명

| 순번 | 사업<br>년도 | 수행사업                          | 신청사업장 | 과제진행상태 | 예비선정<br>결과 | 서류평가 결과 | 심사위원회<br>결과 | 신청완료확인<br>평가결과 |
|----|----------|-------------------------------|-------|--------|------------|---------|-------------|----------------|
|    |          |                               | 신청자   | 상태변경일  |            | 현장평가 결과 | 결정통보일자      | 신청완료확인<br>요청일  |
| 1  | 202<br>5 |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br>차완화 |       |        | 예비선정 선정    |         |             |                |

### STEP 2 < 선정 결과 확인 >

① 선정결과 알림 공문 확인 → ② 결과 조회 → ③ 선정결과 확인

\* 공문과 팝업 메시지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향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 선정결과 공문

② 결과 조회

국회공·통제하는 “표고위 산정확정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재도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수신자: (해당선정(1차) 사업장 대표(의사))

제목: 안전보건 지원사업 예비선정(1차) 알림

1. 귀 사업장의 우수한 안전보건 성과를 축하합니다.

2.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 최우선으로 예비선정(1차)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는 서류·현장평가의 격려 및 지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사업분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중·하위 안전보건 상생지원)

나. 진행기간: 2024.02.13.(화) ~ 03.08.(금)

다. 심사사항

- (서류평가) 평가 담당자의 사전 및 사전상 검토 확인, 필요시 서류 접수
- (현장평가) 평가 담당자의 현장 조망하여 평가 진행

강, 주지사: 귀한 내 시설사 또는 부속회사 위탁운영 취소.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③ 우선지원대상 선정결과

[안전보건 지원사업]

귀 사업장은 1차 예비선정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는 서류·현장평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anto.kosha.or.kr)-아이메이저-선정결과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진행기간: 2월 13일(화) ~ 3월 8일(금)

나. 실시사항: 평가담당자의 사전 및 동선행복 확인, 현장방문 등

확인

### 3. 서류·현장평가

공단 일선기관

사업장

#### 단계 설명



○ **(서류·현장평가)** 공단 일선기관, 사업장(예비 선정된 사업장)

- **(서류평가)** 공단 일선기관은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일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자격, 지원 내용 등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장평가)** 공단 일선기관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자격,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예비선정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현행공정 확인, 사업계획 및 공정개선 점검 결과 부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이 불가합니다.**

- **(평가기간)** 예비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평가 완료

#### □ 공단 이행사항

- **(서류평가)** 서류평가 후 그 결과를 종합지원시스템에 입력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보완(5일 이내)** 요청합니다.
  - 사업장에서 보완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거나, 결격사유를 발견하는 등 부적정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부적정 결과와 사유를** 통보합니다.
- **(현장평가)** 서류평가가 적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과 일정을 조율하여 **사업장 방문 후**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 방문 사업장의 사업대상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 미보유, 사업계획서 불일치 등 **부적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부적정 결과와 사유를** 통보합니다.

#### □ 사업장 이행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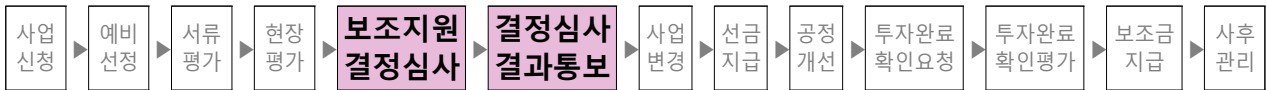
- **(서류평가)** 공단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보완을 요청한 경우 **5일 이내로** 보완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평가)** 사업장은 공단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평가 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사업장 완전 이전 외 현장평가 단계에서 설비 설치 소재지 변경은 불가합니다.



## 4. 보조지원 결정심사 및 결과통보

공단 본부

### 단계 설명



#### ○ (결정 심사) 공단 본부

- (심사위원회) 공단 본부는 서류·현장평가가 적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 (결과 통보) 공단 본부 → 사업장

- (SMS 문자) 사업주의 연락처로 심사 결과 통보
- (종합지원시스템) 종합지원시스템 > 마이페이지 > 결과 확인

### □ 공단 이행사항

- 공단은 예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중 서류·현장평가가 적합한 사업장의 평가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 심사위원회 결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에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미결정된 사업장에 미결정 사유,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공단은 심사위원회 결과를 사업주의 연락처로 SMS 문자 통보합니다.

### □ 사업장 이행사항

- SMS 문자를 수신한 사업주는 반드시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통보 결과(결정통보서)와 이행확인 서약서, 향후 절차를 확인하시고, 안내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결정통보일 이후부터 공정개선이 가능합니다.

### < 심사결과 조회 및 결정통보서 확인 방법 >

#### STEP 1 < 결정통보서 확인 방법 >

##### ① 로그인 → ② 마이페이지



## STEP 2 < 마이페이지 - 통보서 조회 >

### ① 통보서 조회 클릭

나의과제 -

| 순번 | 사업<br>년도 | 수행사업                          | 신청사업장 | 과제진행상태 | 예비선정<br>결과 | 서류평가 결과 | 심사위원회<br>결과  | 신청완료확인<br>평가결과 |
|----|----------|-------------------------------|-------|--------|------------|---------|--------------|----------------|
|    |          |                               | 신청자   | 상태변경일  |            | 현장평가 결과 | 결정통보일자       | 신청완료확인<br>요청일  |
| 1  | 2025     | 2025년 태·홍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br>차완화 |       |        |            | 검토 적합   | <b>통보서조회</b> |                |
|    |          |                               |       |        |            | 현장평가 적합 |              |                |

## STEP 3 < 결정 알림 공문 조회 및 이행확인 서약서 확인 >

### ① 공문 조회 → ② 통보서 조회 클릭 → ③ 서약서 내용 숙지 후 → ④ 동의 클릭

①

③

## STEP 4 < 결정통보서 확인 >

### ①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 화면 표시 → ② 필요 시 화면캡처 하여 사용(출력 및 저장 불가)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

| ■ 신청자      |  |         |  |  |  |
|------------|--|---------|--|--|--|
| 투자번호       |  | 사업관리번호  |  |  |  |
| 사업명명       |  | 사업제지번호  |  |  |  |
| 대표자명(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  |  |
| 소재지        |  |         |  |  |  |

| ■ 결정내역 (단위: 천원, 천원미만 결사, 부가세 제외) |          |          |              |             |            |
|----------------------------------|----------|----------|--------------|-------------|------------|
| 구분                               | 소요금액 (a) | 반당금액 (b) | 신청자 부담금액 (c) | 결정 지원금액 (d) | 보조결정금액 (e) |
| 2024년 태·홍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200,000  | 200,000  | 100,000      | 0           | 100,000    |

- ① 소요금액 (a)은 사업주가 종업원으로부터 경리출 발의 당당에 제출한 경리금액임  
 ② 반당금액 (b)은 종업의 소요금액에 대한 경리출 발에 의한 경리출 발액임  
 ③ 신청자 부담금액 (c)은 소요금액 (a)에서 결정 지원금액 (d)과 당당 결정금액 (e)을 합 산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임  
 ④ 결정 지원금액 (d)은 '일 리적 당당보전 상정지원' 분야에 한하여 결정 (상정결정)을 지급하는 금액임  
 ⑤ 보조결정금액 (e)은 반당금액 (b)에 대하여 사업장 보조금 지급 한도의 동등 과하하여 결사결정에서 지급결정된 금액임  
 ⑥ 보조금 지급결정액 총액(결정 지원금액 (d) + 보조결정금액 (e))은 지원한도액 이하로 결정될 수 있음(보조결정금액과 투자당도액 합산 금액 중 낮은 금액)

|                   |                                   |
|-------------------|-----------------------------------|
| ■ 투자지원대상 결정통보일    | 2024. 03. 08.                     |
| ■ 투자완료(확인 요건) 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거한연과 세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
| ■ 투자완료(확인 요건)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
| ■ 지원사업 등 계약자명 여부  | 계약자명: 미달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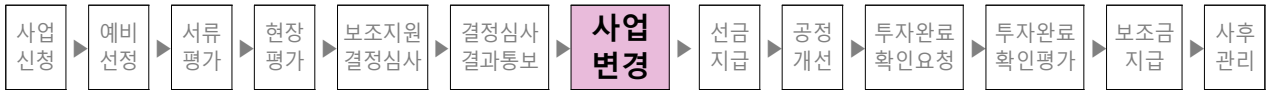
## 5.

## 사업계획 변경

사업장

공단 일선기관

### 단계 설명



#### ○ (사업변경) 사업장(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 (사업변경) 사업장은 도입설비(세부 사양 포함), 제작·판매업체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종합지원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공단의 승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 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여 투자완료(공정개선)가 된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종합지원시스템에 변경 정보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승인결과 통보) 공단 일선기관 → 사업장

- (승인절차) 변경신청(사업장) → 검토 및 승인(공단 일선기관)
- (SMS 문자) 사업주의 연락처로 변경 승인 여부 통보
- (종합지원시스템) 종합지원시스템 > 사업관리(동행) > 사업변경 > 승인여부 확인  
\* 승인된 내용은 결정통보서 2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결정통보일부터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까지 가능

### □ 사업장 이행사항

- 사업장은 공단에 승인받은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 변경신청을 통한 승인 후 투자를 해야합니다.

- (사업 변경) 사업장은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된 내용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변경 신청을 2회 이상 할 경우 종합지원시스템(사업변경) 화면상에는 변경 이력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최초 변경 시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지급받은 금액보다 사업변경 후 보조결정금액이 작은 경우 선금 전액 환수되며 선금은 2회 신청 불가합니다.

\*\* 총 소요금액 3천만원 미만으로 사업계획 변경 불가합니다.

#### < 사업 변경 시 필요 서류 >

- |                            |                     |
|----------------------------|---------------------|
| ① 견적서(세부산출내역서 등)           | ② 변경 설비 카탈로그(도면) 등  |
| ③ 사업계획서(변경설비, 위험성평가 내용 포함) | ④ S마크 안전인증서(가점 해당시) |

### □ 공단 이행사항

- 공단 일선기관은 사업장의 변경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변경 계획이 적절한 경우 승인하며, 부적정 시 변경신청 내역을 반려합니다.

- (보조금 변경) 설비 변경으로 소요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나, 보조결정금액 또는 직전 변경된 보조결정금액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요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결정금액이 변경되어 재결정됩니다.

## < 공단 사업변경 검토기준 안내 >

- 공정 종류 변경 및 제외는 사업계획서 제출내용, 현장평가 확인내용과 상이하고 위험성평가 결과의 유해·위험요인 미개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 승인불가**합니다.
- 예비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점이 하락하는 경우 **변경 승인불가**합니다.

### < 사업계획 변경 예시 >

| 구 분 | 변경 요청 내용              |                       | 승인 | 불승인 | 사 유                                                                      |
|-----|-----------------------|-----------------------|----|-----|--------------------------------------------------------------------------|
|     | 공정 종류<br>변경이<br>없는 경우 | ▶ 설비대수 변경             | ○  |     | -                                                                        |
|     |                       | ▶ 설비금액 변경             | ○  |     |                                                                          |
|     |                       | ▶ 설비모델 또는<br>세부 사양 변경 | ○  |     |                                                                          |
|     | 공정 종류 변경 또는 제외 시      |                       |    | ○   | 사업계획, 현장평가 내용과 상이하고<br>신청시 제출했던 위험성평가의 유해·<br>위험요인이 미개선 되므로 <b>승인 불가</b> |

### < 사업계획 변경 승인·불승인 예시 >

| 보조결정            |    |   | 예시1       | 설비    | 대수 | 승인 사유                                                                                 |
|-----------------|----|---|-----------|-------|----|---------------------------------------------------------------------------------------|
| 설비              | 대수 |   | 변경<br>승인  | 프레스   | 1대 | · 설비 종류에 변경이 없고,<br>· 신청 대수만 변경<br>→ 변경신청 승인                                          |
| 프레스             | 2대 | → |           | 전단기   | 1대 |                                                                                       |
|                 |    |   |           | 절곡기   | 1대 |                                                                                       |
|                 |    |   |           | 컨베이어  | 2대 |                                                                                       |
| 전단기<br>(S마크 인증) | 2대 | → | 변경<br>불승인 | 프레스   | 1대 | · 설비 종류(기타 포함) 변경<br>· 가점신청한 설비 제외로 예비선정<br>점수 하락<br>· 기재출한 유해·위험요인 미개선<br>→ 변경신청 불승인 |
| 절곡기             | 2대 | → |           | 산업용로봇 | 2대 |                                                                                       |
|                 |    |   |           | 원료공급기 | 2대 |                                                                                       |
| 컨베이어            | 1대 |   |           | 컨베이어  | 제외 |                                                                                       |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변동시 (재)신청한 보조결정금액은 상승할 수 없습니다.

### < 지원금액 변경 예시 >

| 구분     | 최초 신청시 | 1차 사업변경                     | 2차 사업변경      |
|--------|--------|-----------------------------|--------------|
| 소요금액   | 2억원    | 1억 6천만원                     | 2억원          |
| 보조결정금액 | 1억원    | 8천만원 + 30만원*<br>* 원가검토비용 보전 | 8천만 원 + 30만원 |

**※ 사업변경으로 인해 보조결정금액이 하향된 경우 다시 변경하여도 상승 불가**

## < 사업변경 신청방법 >

### STEP 1 < 사업관리 - 사업변경 신청 >

① 사업관리(동행) → ② 사업변경 → ③ 사업선택 → ④ 변경신청

사업관리(동행) | 사업변경

과제신청 | 신규 신청 | **② 사업변경** | 사업장정보변경신청

사업관리(동행) | 사업변경

검색조건 입력

사업구분 | 전체 | 사업명 | 전체

변경신청 가능 사업목록

사업구분 | 수행사업 | 투자번호 | 중단일시 | 투자기일 | 사업선택

③

④

사업장정보변경신청

사업변경 신청서 작성 시 변경사항 및 변경신청내역을 꼭 기재하십시오.

변경신청 사업목록

④

### STEP 2 < 변경 사항 선택 >

① 변경신청 사유 선택

사업관리(동행) | 사업변경

과제신청 | 신규 신청 | 사업변경 > | 사업장정보변경신청

사업변경 신청을 2회이상 하는 경우 최초변경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 변경될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과제기본정보

사업년도 | 투자번호 | 사업구분 | 수행사업 | 투자기일 | 담당자 연락처

①

변경신청 사유

변경사유

공공업체 생산능력 부족 | 투자기일 예산 부족 | 기타

공공업체 생산능력 부족 | 공제상비 생산 중단

### STEP 3 < 제작판매업체 또는 도입설비(품목, 모델) 변경 >

① 해당되는 변경사항 입력

변경 공급업체 담당자

공공업체검색

공공금액이 가장 많은 공공업체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명(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 | \* 전화번호 | \* 핸드폰 | \* 이메일

변경 신청 설비 구입비

(단위 : 원 / VAT 별도)

+ 설비 구입비 추가

구분 | 품명 | 국/외산 | 국가 | 규격 | 단가 | 수량 | 계 | 공급업체 | 삭제

프레스

합계

\* 도입설비(품목, 모델명) 변경 시 견적서, 세부산출내역서, 사업계획서 및 카탈로그(도면) 등 파일을 첨부



## 6.

## 선금 지급

사업장

공단 본부

## 단계 설명



## ○ (선금 신청) 사업장(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

- 공정개선에 필요한 선금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종합지원시스템에 선금급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범위) 보조결정금액(사업주 자부담금 제외)의 70%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금 지급 후 사업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지급된 선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 ○ (선금 지급) 공단 본부 → 선금급 신청 사업장

- (SMS 문자) 선금급 신청 사업주에게 승인 여부 및 지급예정일 통보
- (종합지원시스템) 종합지원시스템 > 사업관리(동행) > 선금 신청 > 결과 확인
- (신청기한) 사업 신청 시 또는 결정통보일 후부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가능

## □ 공단 이행사항

- 사업 신청 단계에서 선금급을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받아 차기 보조금 지급일(1개월 이내)에 선금을 지급합니다.

## □ 사업장 이행사항

- 사업 신청 단계에서 선금급을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금급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선금 지급받은 금액보다 사업변경 후 보조결정금액이 작은 경우 선금 전액 환수되며 선금은 2회 신청 불가합니다.

- (지급보증보험) 정부보조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선금급에 대해 사업장은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 가입비용은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 &lt; 선금급 제출서류 &gt;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 또는 음영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지급보증보험증권

(피보험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0)  
(가입금액) 보조금 결정금액 전액(또는 선금급 신청금액 이상이되, 투자완료시 변경 필요)  
(가입기간) 선금급 신청일\* 이전 ~ 2031.12.31.

\* 사업 신청 단계에서 선금급을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일

※ 지급보증보험증권은 ①선금급 신청(선금급 신청금액 이상), ②투자완료 확인요청(보조결정금액 전액) 시 제출

## ②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사업장(법인사업자) 또는 사업장 사업주(개인사업자) 계좌

※ 입금 불가(대출 전용, 거래 중지 등) 계좌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 선금급 신청 방법 >

### STEP 1 < 선금급 신청 방법 >

① 사업관리(동행) → ② 선금신청 → ③ 조건 입력 및 조회 → ④ 신청 클릭

### STEP 2 < 선금신청 - 사업정보 확인 >

① 사업정보 확인

### STEP 3 < 선금 신청금액 입력 >

① 선금 신청금액 작성 → ② 첨부문서(지급보증보험증권, 통장사본)

### STEP 4 < 입금계좌정보 입력 >

① 입금계좌정보 입력 → ② 저장 → ③ 신청서 제출

## 7.

## 공정 개선

## 사업장

## 단계 설명

○ **(공정 개선) 사업장**(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 **(공정개선)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결정통보일 이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설비제작, 장비도입 및 작업환경 개선 등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지원 설비가 중고설비 또는 재생품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보증보험)** 정부보조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조금에 대해 사업장은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 가입비용은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 **(계약체결)** 결정통보일(또는 사업변경 승인일) 이후 제작 판매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투자기한)**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신청시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 **공단 이행사항**

- 공단은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투자완료기한 도래 안내, 사업기한 연장 안내 및 투자완료 독려(SMS 등)

□ **사업장 이행사항**

-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은 결정통보일 이후 설비를 도입할 수 있으며, 도입 후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 공정개선이 완료된 경우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합니다.
- **(기간연장)** 설비 출고 지연 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이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시 기간을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총 6개월(4+2개월)의 기간 내에 설비가 도입되어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이 되어야 하며, 기간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이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됩니다.
- 사업장은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까지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위험공정개선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사항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 (예시) 위험물안전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 등) 등

- **(사업주교육 이수)** 보조금 지원지급대상자는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정범위) '24년 1월 1일 이후 ①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교육, ③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경우 인정

## <사업주교육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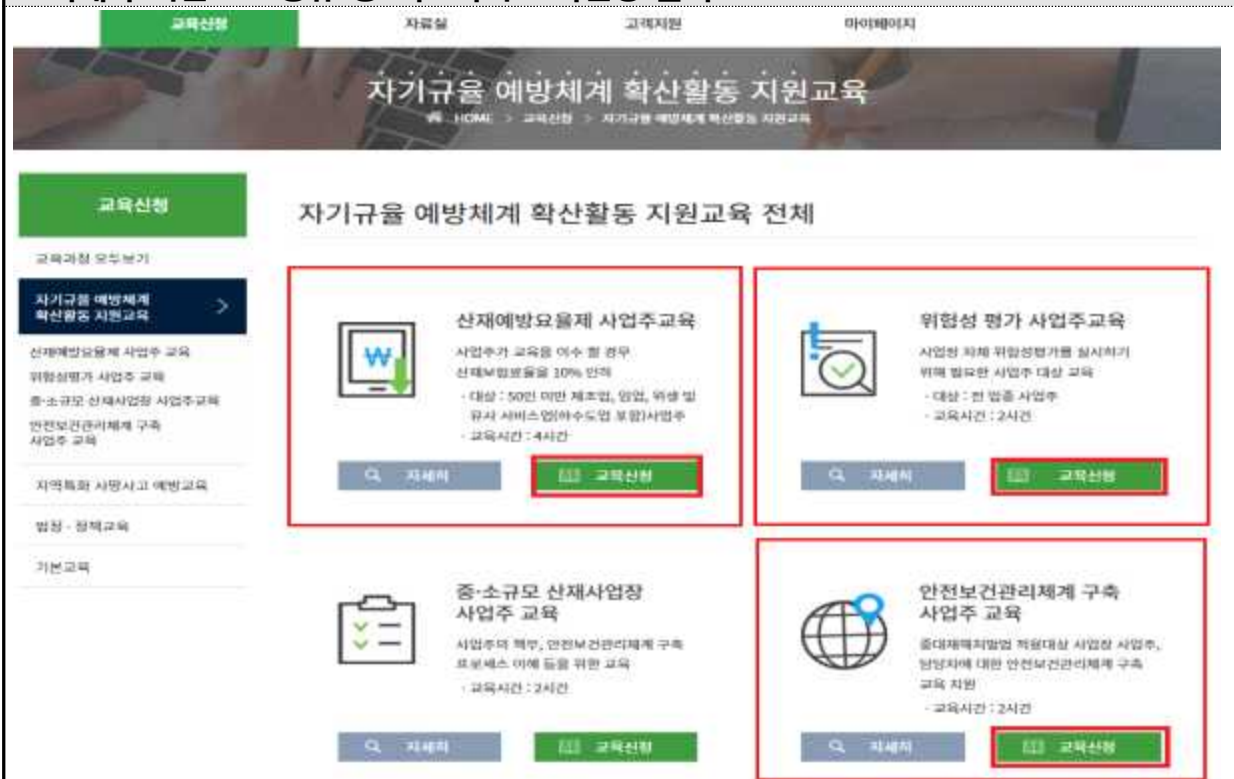
### STEP 1 < 안전보건교육포털 접속 >

① 안전보건교육포털(educosha.or.kr/headquarter/) 접속 → ② 교육신청 → ③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활동 지원교육 클릭



### STEP 2 < 교육신청 >

교육제목 확인 → 3종류 중 택1 하여 교육신청 클릭



※ 기타 교육관련 문의사항 ☎ 1644-2275, 1644-5656

## IV 투자완료 확인

### 1. 투자완료 확인요청

사업장

#### 단계 설명



#### ○ (투자완료 확인 요청) 사업장(공정개선 완료 사업장)

- (확인요청) 사업장은 공정개선 완료시 투자완료보고서, 증빙서류 등을 종합지원 시스템에 등록하여 투자완료 확인요청 및 보조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투자기한(4+2개월)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요청기한)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시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 □ 사업장 이행사항

- 사업장은 공정개선이 완료되었음을 공단에 확인받기 위해 투자완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 투자완료 확인요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표) 개선 대상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개선완료에 따른 위험성 해소여부를 반영한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투자완료 제출서류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 또는 음영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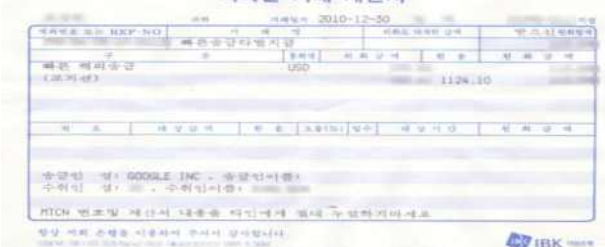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산재완납증명원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자료실 양식 활용) 및 공정 개선사진
- 공급(납품) 계약서 1부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부(거래명세서에 설비별 모델명, 거래단가 등 세부내역 기재)
  - 국세청 제3자 조회 가능한 세금계산서 제출
- 지급보증보험증권 (증권 가입 시, "결정통보서" 등 서류 필요)
  - 피보험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0)
  - 가입기간 : 투자완료 확인요청일 이전 ~ 2031년 12월 31일
  - 가입금액 : 보조결정금액(변경 시 변경금액) 이상
- 원가계산(검토)보고서(사업장 의뢰시 발행된 세금계산서 포함)
- 안전인증 관련 서류(안전인증품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원청의 지원내역 증명 1부(원청 직접지원 분야에 한함)
- 사업주 교육 이수증(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산재예방요율제)
  - '24년 1월 1일 이후 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

- (기한연장)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의 기간 내 투자완료 확인 요청이 어려운 경우 기한 연장 신청(2개월)이 가능합니다. (25p STEP2 참조)
- 사업장은 도입하고자 하는 설비가 수입물품이고 국내 대리점 판매가 아닌 직접 수입하는 경우(국내 무역회사를 제작·판매업체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수입물품의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추가 제출서류>

- ▶ 수입세금계산서(수입자 보관용) 및 외국환 거래계산서(거래명세표)
- ▶ 수입신고필증
- ▶ 수출(입)통관거래내역 등 소요비용 관련 증빙자료 등

※ 사업장이 도입하고자 하는 설비가 국내 대리점(제작·판매업체)을 통해 판매하는 수입물품의 경우, 사업장과 대리점간 세금계산서 및 소요비용 관련 증빙자료 등으로 같음

| [수입세금계산서]                                                                          | [외국환거래 계산서]                                                                         |
|------------------------------------------------------------------------------------|-------------------------------------------------------------------------------------|
|  |  |

- (원가계산(검토) 의뢰) 원가계산(검토)보고서는 사업장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정개선을 완료한 후 정산서류(세금계산서, 세부산출내역서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제출하여 정산을 의뢰합니다.

- (의뢰절차) 종합지원시스템에 제공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참고하여 원가정산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지원시스템 → 사업안내 → 참여기관 소개 → 원가계산 용역기관 소개

#### < 원가계산(검토)금액 비용 지원 >

- ▶ (원가계산 용역기관) (사)지방계약원가협회 소속 기관 중 사업장의 의뢰에 따라 정산 업무 수행
- ▶ 원가계산 용역기관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집행 증빙)를 검토하여 비용 정산
- ▶ (원가검토비용 정산)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통한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①실제금액(부가세 제외)과 정산 금액 구간에 따라 ②공단에서 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작성 비용으로 인정(단, 지원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사업분야에 따라 지원비율(50%, 40%) 적용된 금액으로 지원

####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비용 공단 인정금액>

| 총 소요금액 |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
| 인정금액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 원가 계산(검토)가 제작·판매업체 의뢰로 진행된 경우, 사업장이 원가 정산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검토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투자완료 기한 연장요청 및 확인요청 방법 >

### STEP 1 < 사업관리 - 투자완료 확인요청 >

① 사업관리(동행) → ② 투자완료 확인요청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안전동행지원

회원정보 마이페이지 로그인

사업안내 알림/참여마당 홍보관

**① 사업관리(동행)**

MENU

사업소개 공지사항 보도자료 과제신청  
 사업광고 자료실 홍보자료 선금 신청  
 참여기관소개 자주묻는질문(FAQ) 사업장정보변경신청  
 통합검색

**② 투자완료 확인요청**

### STEP 2 < 투자완료 확인요청 가능 사업목록 >

① 수행사업 확인 → ②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한 연장 시) 연장신청\* 클릭 →  
 ③ (투자완료 요청 시) 요청 선택

\* 연장 신청은 투자완료 확인요청 가능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함

사업관리(동행) | 투자완료 확인요청

과제신청 선금 신청 사업장정보변경신청 투자완료 확인요청 >

검색조건 입력

사업구분 전체 사업명 전체

투자완료 확인요청 가능 사업목록

| ① 수행사업 | 투자완료 확인요청 가능 기간 | 요청일자          | 진행상태        |
|--------|-----------------|---------------|-------------|
|        |                 | <b>연장신청</b> ② | <b>요청</b> ③ |



### STEP 3 < 투자완료 사진 첨부 >

① 투자완료 사진대장 → ② 투자완료 설비에 대한 사진 첨부 → ③ 저장

### STEP 4 < 투자완료 제출서류 첨부 >

① 첨부파일 → ② 투자완료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 ③ 저장 후 최종제출\*

\* 저장 후, 최종제출을 반드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완료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장에 있습니다.

## 2. 투자완료 확인평가 (서류·현장)

공단 일선기관

### 단계 설명



#### ○ (확인평가) 공단 일선기관

- **(서류확인)** 공단 일선기관은 사업장이 종합지원시스템에 입력한 투자완료 정보와 제출 서류의 일치 여부, 누락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 **(현장확인)** 공단은 사업장이 도입한 내용이 결정(승인)된 내역과 동일한지 여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합니다.  
**※ 사업 신청 시 승인받은 내용과 실제 도입한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완기간)** 보완요청일로부터 지정된 기한(근무일 기준 최대 30일) 이내
- **(보조금 확정)** 투자완료 확인평가 시 확인된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액이 확정 및 지급

### □ 공단 이행사항

- 공단은 사업장이 제출한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위해 제출한 내역을 종합지원시스템과 실물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합니다.
- **(서류확인)** 공단에 승인받은 내용으로 공정개선하였는지, 설비 소유자와 사업장 대표(또는 법인)가 일치하는지, 제출한 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현장확인)** 공단 일선기관 직원이 사업장에서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제출한 내역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미일치 시 투자완료 확인 “부적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보조금확정)** 결정된 보조금액과 실거래(세금계산서) 금액, 원가계산(검토)금액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보조금을 재확정합니다.
- 공단은 투자완료 확인요청에 따른 서류 또는 현장 확인 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기간(근무일 기준 최대 30일)을 부여합니다.
- 투자완료 확인 결과가 부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은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장 이행사항

- 투자완료 확인요청한 사업장은 공단 직원이 실물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문일자 조율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현장확인 협조) 공단 직원이 수행하는 투자완료 현장 확인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보완완료) 공단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은 사업장은 지정된 기한(보완요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

## < 보완사항 제출 방법 >

### STEP 1 < 보완사항 제출 >

사업관리(동행) → 투자완료 확인요청 → 표출되는 보완사항 확인 → ① 보완사항 삭제(휴지통) 및 입력(업로드) → ② 저장 후 보완제출

#### 투자완료 확인요청

사업관리 > 투자완료 확인요청

투자완료 확인요청

투자완료 사진대장

첨부파일

#### 첨부분서

+ 온라인 자료제출(스크린샷)

| 항목                                      | 양식 | 허용파일                                           | 필수여부 | 첨부분서         |
|-----------------------------------------|----|------------------------------------------------|------|--------------|
| 설비 구매 설치 계약서 사본 1부                      |    | hwp,pdf,dock,pptx,lsx,jpg,jpeg,gif,png,zip,egg | ○    | <div>①</div> |
| 배급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각 1부                    |    | hwp,pdf,dock,pptx,lsx,jpg,jpeg,gif,png,zip,egg | ○    |              |
| 원거계산 보고서 1부                             |    | hwp,pdf,dock,pptx,lsx,jpg,jpeg,gif,png,zip,egg |      |              |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 hwp,pdf,dock,pptx,lsx,jpg,jpeg,gif,png,zip,egg | ○    |              |
| 안전관리서 사본 1부 (해당 시)                      |    | hwp,pdf,dock,pptx,lsx,jpg,jpeg,gif,png,zip,egg |      |              |
| 보조금 입금 요청 통장 사본 1부, (자부담 일사금 납부 영수증 포함) |    | hwp,pdf,dock,pptx,lsx,jpg,jpeg,gif,png,zip,egg |      |              |

②

보완제출

저장

목록

### 3.

## 보조금 지급

공단 본부

#### 단계 설명



○ (보조금 지급) 공단 본부 → 사업장

- (지급절차) 공단 본부는 일선기관의 투자완료 확인결과 적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요청한 금융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 공단 이행사항

- 공단 본부는 투자완료 확인결과가 적절하여 보조금 지급이 적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완료 확인 시 확정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일정) 공단 보조금 지급 일정에 따라 월 1회 또는 2회 보조금을 지급하며, 횟수는 월마다 상이합니다.

#### < 보조금 지급절차 >



\* 투자완료 확인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투자완료 승인결과 통보(온라인)

- (공단 본부) 투자완료 승인결과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실시 예정을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 < 투자완료결과 확인 방법 >

#### STEP 1 < 진행 결과 확인 >

① 종합지원시스템-마이페이지 → ② 투자완료확인 평가결과 “결과 확인” 클릭

## STEP 2 <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실시 안내문 확인 >

① 투자완료평가 결과 공문 확인 → ② 결과 조회 클릭

① 투자완료평가 결과 공문

② 결과 조회

본문을 관리하고, 문본은 복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수신자 보조금 지급 사업장 대표(이사)  
(경유)  
제목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실시 알림

1. 귀사의 무공해 달성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투자완료 확인평가 결과 위험공정 개선 내용이 적절하여, 소요금액 적정성을 검토하여 작성된 '보조금 지급요청 계장'로 발급증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사후관리기간 동안 안전투자율목의 지출 목적에 따른 적합,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취소사유 발생 시 안전투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안전투자율목의 안전성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관리기간 : 6년

○ 사후기술지도 : 투자완료 확인 다음연도부터 연 1회

○ 제출서류 : 해당지점 세무계장서 발급요청서(국세청 확인)

○ 변경신고 : 소재지, 연락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일 공문에 신고(변경할 수 없음, 보조금 반환)

○ 취소사유 (보조금 반환 사유)

○ 기타 그 밖의 특정한 원인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일 목적외에 사용된 경우(내역서 등)

○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혈받은 사실 및 정비를 목적으로 이전 실시한 경우

○ 보조금 지급 후 사업재개기간 내 해당 기계·구내 중대한 결함(누출, 결빙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지출금비를 지출목차의 부합지도를 관리·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부합과주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액정원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정한 실비를 일제에다 복수·환상한 경우 그 밖에 지출 목적에 적합하여 관리·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 그 밖에 불합당하다고 평가받아 안전투자 안전투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 공단에 제출한 세무계장서로 미신고하거나, 제출한 세무계장서와 제공 투자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주소  
대표자  
과목명  
시점  
일

http://www.kosha.or.kr

## STEP 3 < 투자완료결과 및 지급(예정)일 확인 >

① 투자완료평가 결과 확인 → ② 투자완료결과, 지급(예정)금액, 지급(예정)일 확인

① 투자완료평가 결과

② 투자완료결과, 지급(예정)금액, 지급(예정)일 확인

| 구분 | 투자번호 | 지급요청금액 | 투자완료결과 | 지급(예정)금액 | 지급(예정)일 |
|----|------|--------|--------|----------|---------|
|    | 투자번호 | ,500천원 | 적합     | ,500천원   |         |

## 단계 설명



## ○ (사후관리) 공단 → 사업장

- **(관리기간)** 공단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연도의 말일(12월 31일)까지 연 1회 이상 사업장의 설비 가동상태 등 사후관리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 ○ (주요내용) 공단 → 사업장

- **(설비확인 등)** ①지원 후 사업 지속여부, ②산재보상보험 유지여부, ③개선공정 유지·사용상태 적정성 확인 및 대상 설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합니다.
- **(부정수급 확인)** 보조금액 적정성 확인 및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개인카드 구매 등으로 인하여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 부가세신고서,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등 증빙자료 징구(세무대리인 등 신고자 확인 필요)

## &lt; 보조금 환수 대상 &gt;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 보조·지원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사업장 이행사항

- **(변경사항 신고)** 안전동행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은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사업장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정보변경 신청방법 34p 참조)
- **(양도·양수 신고)** 법인전환 등 양도·양수 변경 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양수·양도적정성, 양도자 폐업여부, 사업의 동일성 등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계 설명

- **(자진 취소)** 사업장이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자진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종합지원시스템(사업관리(동행)-사업취소)를 통해 사업취소를 신청합니다.
- **(공단 취소)** 공단은 사업장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보조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1.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신청시 2개월 연장)을 초과한 경우
2.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투자완료 확인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 및 향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참여제한 조치 적용 등 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6. 결정통보일 이전에 설비를 도입한 경우
7. 보조결정 내용과 다른 임의의 기계·기구·설비 또는 공정을 도입한 경우
8. 사업 참여부터 사후관리기간 내 산재보험이 소멸되거나 유지되지 않은 경우
9. 폐업 또는 파산,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 그 밖에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이의제기)** 공단은 사업취소 사유, 이의제기 기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에 통보하며, 사업취소를 통보 받은 사업장 중 공단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기한 이내에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금 반환)** 선금을 지급받은 사업장 중 투자완료 기한 내 미제출 및 자진 취소로 인해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기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단 계좌로 입금 후, 종합지원시스템 '사업관리-자진취소'에 입금증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하여 임의로 선금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 &lt; 사업취소 신청방법 &gt; ※ 사업장이 사업을 자진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 STEP 1 &lt; 사업취소 &gt;

## ① 사업관리(동행) → ② 사업취소

| 사업안내                   | 알림/참여마당                            | 홍보관          | ① 사업관리(동행)                                   |
|------------------------|------------------------------------|--------------|----------------------------------------------|
| 사업소개<br>사업공고<br>참여기관소개 | 공지사항<br>자료실<br>자주묻는질문(FAQ)<br>통합검색 | 보도자료<br>홍보자료 | 과제신청<br>선금 신청<br>사업변경<br>사업장정보변경신청<br>② 사업취소 |

## STEP 2 < 사업취소 >

① 과제목록 확인 → ② 미입력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사업관리(동행)' page.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사업관리(동행)' selected. The main area is titled '사업취소'. Below the title, there's a search bar and a table of tasks. The '과제 목록' table has columns: 사업번호, 투자번호, 사업진행상태, 취소구분, 사업구분, 사업명, 투자기간, 공급업체, 사업취소원래일자, 미제출기한, 미제출일자, 사업취소처리일자, and 취소상태. The '미입력'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 STEP 3 < 사업취소 >

① 자진취소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사업관리(동행)' page.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사업관리(동행)' selected. The main area is titled '사업취소'. Below the title, there's a search bar and a table of tasks. The '자진취소 신청 내역' table has columns: 순번, 지급상대구분, 취소사유, 취소일, and 상태. The '자진취소'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 STEP 4 < 취소사유 작성 >

① 취소사유 작성 → ② 보조금 반환 (해당 시) 입금증 파일추가 → ③ 저장 후 → ④ 신청 클릭

\* 비해당 시, ① 취소사유 작성 후 → ③ 저장 → ④ 신청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자진취소처리' form. It has a title bar with '자진취소처리' and a close button. Below the title bar, there's a form with several fields. The '취소일' field is at the top. Below it, there's a large text area for '① 취소사유'. To the right of this area, there's a button labeled '② 파일추가'. Below the text area, there's a table with columns '순번' and '첨부문서'. Below the table, there's a text area for '③ 취소사유'.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two buttons: '저장' and '신청', both highlighted with red boxes.

## VII 사업장 정보변경 신청

사업장

### □ 사업장 이행사항

- 사업장은 사업장 정보변경(상호, 대표자명, 주소지 등), 양도·양수로 인해 사업장의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장 정보변경을 통한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보변경) 단순 정보변경(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등)인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업장 정보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정보변경 시 필요 서류 >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산재보험완납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급) ③ 기타(법인등기부등본 등 요청서류)

\* 사업장 전체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만 해당

\*\* 법인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만 해당

- (양도·양수) 양도·양수인 경우, 양도인이 ①,②,③,⑤,⑥,⑦의 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양수를 위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지급보증증권을 가입(변경)하여, ④서류 제출을 한 뒤,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양도양수 시 필요 서류 >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산재보험완납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급) ③ 포괄양도양수계약서  
④ 지급보증보험증권(양수인) ⑤ 안전동행 지원사업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양수인)  
⑥ 중소기업 정보활용 동의서(양수인) ⑦ 기타(폐업사실 증명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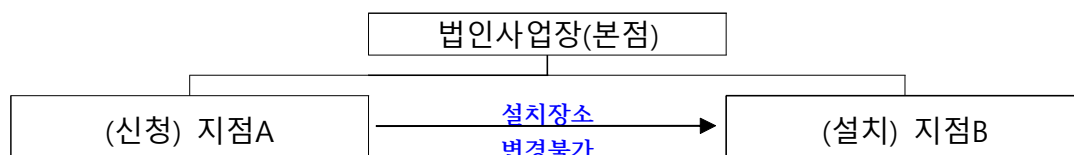
※ 법인 대표자 변경 또는 양도양수로 인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대표자가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 시스템(<https://anto.kosha.or.kr>)에 회원가입 된 상태여야 함.

### □ 공단 이행사항

- 공단은 사업장에서 신청한 내역 검토 후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가 적정할 경우 승인하며, 부적합 시 신청 내역은 반려됩니다.
- 사업장 주소지 변경은 사업장이 완전 이전한 경우에만 승인 가능하며, 지점 간 이동 또는 사업장 증설 등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은 승인 불가 합니다.

※ 법인사업장(본점)의 지점A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설비를 법인 소유의 지점B로 **변경 설치불가**

- A와 B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업 신청 단계부터 B로 신청해야 함



## < ① 사업장 정보변경 신청 방법(단순변경) >

### STEP 1 < 정보변경 >

사업관리 → 사업장 정보변경 신청 → ① 등록 선택

사업관리(동행) | 사업장정보변경신청

검색조건 입력

요청유형: 전체

종교: 전

| No.           | 요청유형 | 신청일 | 처리일 | 상태 |
|---------------|------|-----|-----|----|
|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 |      |     |     |    |

① 등록

### STEP 2 < 정보변경 >

① 요청 유형 선택(정보변경) → ② 해당 변경 정보 선택

사업관리(동행) | 사업장정보변경신청

사업장정보

① \* 요청유형: 정보변경

② 변경

사업장정보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

대표자(ID)

소재지

설치소재지

업종명(업종코드)

### STEP 3 < 정보변경 >

① 변경사유 작성 → ② 관련 첨부파일 업로드 → ③ 요청 선택

① 변경사유

\* 사유

② 첨부파일

| 파일구분                   | 파일명 | 파일크기 | 양식  |
|------------------------|-----|------|-----|
| * 사업자등록증               |     | 업로드  | ... |
| * 산재관납증명원(발행 후 15일 이내) |     | 업로드  | ... |
|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 업로드  | ... |

③ 등록 요청

## < ② 사업장 정보변경 신청 방법(양도양수) >

### STEP 1 < 양도양수(양도인) >

[양도인] 사업관리 → 사업장 정보변경 신청 → ① 등록 선택

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지원사업 사업안내 알림/참여마당 홍보관 사업관리(동행)

사업관리(동행) | 사업장정보변경신청

검색조건 입력 [조회]

과제신청

선금 신청

사업변경

사업장정보변경신청

사업취소

총 0 건

| No.           | 요청유형 | 신청일 | 처리일 | 상태 |
|---------------|------|-----|-----|----|
|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 |      |     |     |    |

1

① 등록

### STEP 2 < 양도양수(양도인) >

① 요청 유형 선택(양도양수) → ② 양도/양수 선택 → ③ 양수인 ID 검색

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지원사업 사업안내 알림/참여마당 홍보관 사업관리(동행)

사업관리(동행) | 사업장정보변경신청

사업장정보

① \* 요청유형 양도양수

기존 변경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

대표자(ID)

소제자

설치소제자 ☐ \* 과제별 설치소제자 조회

업종명(업종코드)

② 양도/양수 선택 선택

변경대표자명

변경대표자ID

ID검색 ③

### STEP 3 < 양도양수(양도인) >

① [양수인] 아이디 또는 이름 조회 → ② 해당 사업장 선택

### STEP 4 < 양도양수(양도인) >

① 변경사유 작성 → ② 관련 첨부파일\* 업로드 → ③ 요청 선택

\*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외(조건부 승인 이후 첨부가능합니다)

### STEP 5 < 양도양수(양도인) >

① 공단 검토 후 조건부 승인(1차)



## STEP 6 < 양도양수(양수인) >

[양수인] 로그인 → 사업관리 → 사업장 정보변경 신청 → ① 조건부 승인 선택

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지원사업 사업안내 알림/참여마당 홍보관 사업관리(동행)

**사업관리(동행) | 사업장정보변경신청**

과제신청 | 산금 신청 | 사업변경 | **사업장정보변경신청** | 사업취소

검색조건 입력

요청유형: 전체

총 1건

| No. | 요청유형 | 신청일 | 처리일 | 상태    |
|-----|------|-----|-----|-------|
| 1   | 양도양수 |     |     | 조건부승인 |

## STEP 7 < 양도양수(양수인) >

① 결정통보서 다운로드 선택 → ② 결정통보 변경내역 확인(SGI서울보증 제출용)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승계 → ③ 지급보증보험증권 첨부 → ④ 수정 선택 → 양도·양수 최종 승인(2차)

**사업장정보변경신청**

안전 동행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보조금 지급 내역

사업장정보

신청자

| 구분 | 변경사유 | 조건부 승인일자 |
|----|------|----------|
| 양도 |      |          |
| 양수 |      |          |

첨부파일

파일구분

| 파일구분                      | 파일크기   |
|---------------------------|--------|
| 사업자등록증(양수인)               | 304 KB |
| 산재보험증명서(양수인, 발행 후 15일 이내) | 439 KB |
| 포괄양도양수계약서                 | 587 KB |
| 이행보증보험증권(양수인)             | -      |

요청상태

| 상태   | 조건부승인 | 처리 | 요청일 | 처리일 |
|------|-------|----|-----|-----|
| 검토이전 |       |    |     |     |

④

취소 | **수정** | 신청취소

## VIII FAQ

### <1. 지원 자격 관련>

#### Q1-1) 중소기업(소기업)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일 시 중소기업(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당시 유효기간 내일 것)
- (격차완화 분야)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장에 지원가능하며,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상생지원 분야)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장에 지원가능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행은 중소벤처24(smes.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

#### < 확인서 양식 >



#### Q1-2) 뿌리기업 확인서는 필수인가요?

- ☞ 필수가 아닙니다.
- 공고문 상 고위험 6대 업종(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 및 1·2차 전지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뿌리기업 확인서(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분야만 해당)를 제출하면 됩니다.
  - ☞ 뿌리기업 확인서는 활용기술(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분야만 해당)이 표기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표기가 없을 경우 추가 증빙(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완납증명원)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Q1-3) 상시근로자수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 ☞ 상시근로자수가 0명이거나 50명이 넘을 경우 사업 신청시 고용보험가입자명부를 근거로 작성된 증명자료(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임을 증명)를 첨부하면 됩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이며,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 Q1-4)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 지원 불가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가 1명 이상임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단,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가점 관련>

**가점항목 오입력, 허위입력 등 예외없이 부적합(취소)처리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 Q2-1) S마크 안전인증품은 모두 가점 대상인가요?

☞ 모든 S마크 안전인증품이 가점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 신청 당시 S마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는 가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프레스, 사출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기계·설비의 부품·부속장치(또는 기능·구성의 일부), 방호장치·보호구, 이동식·휴대용 설비 등 공고문상 지원불가 품목의 경우 가점 적용 대상이 아니니 신청시 유의 바랍니다.

### Q2-2) 최초 신청 가점을 적용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안전동행 지원사업(舊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을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이력이 없는 사업장이 가점 적용 대상입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후 취소한 이력이 있을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포함) 가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2-3)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가점을 적용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작업장 안전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행안전(2종), 소방안전(2종)을 모두 적용 및 도입하는 사업장이 가점 적용 대상입니다.

- 4종 중 일부만 도입하는 경우 비용지원은 가능하나, 가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은 1월 중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입니다.

### Q2-4) 위험성평가 인정 가점을 적용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위험성평가 인정 가점의 경우 C, D 항목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C항목) ① '24. 12. 31.기준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내 사업장(자동 점수부여)  
② '25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선정 전 점수 일괄부여)
- (D항목) 고시('25. 1. 2.) 개정 이후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하여 인정받은 사업장  
(가점 선택, 증빙 제출 필요)

※ 사업 신청일 기준 인정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Q2-5)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가점을 적용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공단(위탁 포함)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24년 이후)를 1회 이상 받은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안전동행 지원사업 신청 후, 컨설팅을 받은 경우 가점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 <3. 지원 품목 관련>

#### Q3-1) 신규설비를 구매할 경우 기존 설비는 폐기해야 하나요?

☞ 공정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기존 공정(설비)의 폐기 또는 신규 설비 도입 등을 통해 개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공정에 대한 위험요소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공정(설비)에 안전장치 설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뤄진 후 사용해야 합니다.

#### Q3-2)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공정 또는 설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통해 개선대상 공정 및 설비의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기존공정과 관련 없는 설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시1) 현재 해당 공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공정 외주화 등)이 생산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공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외주업체를 통한 철판 가공 → 레이저가공기 도입 : **기존 공정 미보유로 지원 불가**

(예시2) **이동식·휴대용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사업장이 **해당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정개선은 빈도를 줄이거나 강도를 줄이는 취지의 개선이며, 단순히 빈도를 늘리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Q3-3) 지원이 불가능한 작업환경 시설은 어떤 설비인가요?

☞ 개선 대상 공정과 관련된 국소배기장치, 전기공사(증설)와 같이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선 대상 공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바닥 평탄화 및 에폭시 공사, 조명공사,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통사항)**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하역운반기계 및 인력운반기계(지게차, 이동대차 등),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단순기계·기구(적재대, 공구함, 작업대 등), 휴대용 이동식 기계·기구(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수공구 등), 작업환경(조명, 바닥 등) 단독개선, 자사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 중고 재생기계·기구 등

(예시-1) 작업환경 중 국소배기장치\*, 전기공사 개선 신청의 경우 대상공정에 필요한 개선은 인정하나, 대상공정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장소의 개선은 불인정

\*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구로 구성된 설비를 말함

(예시-2) 대상 공정과 무관하게 바닥, 조명설비만 단독 개선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불가

#### Q3-4) 신청사업장이 해외에서 도입설비를 직접 수입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해외에서 도입 설비를 직접 수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해외로부터 설비 도입 시, **국내 무역회사 또는 해외기업의 국내 대리점**을 제작·판매업체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Q3-5) 원청에서 생산·판매하는 품목을 공정개선을 위해 도입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 원청이 생산·판매하는 품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원청의 생산·판매하는 제품(완제품)은 사외하청에서 생산하는 제품(부품, 반제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원청의 제품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사외하청이 자체 생산하는 제품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격 미충족 및 지원 불가 품목을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금 지원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에 따라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최대 5배)이 부과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됩니다.

**Q3-6)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 도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제조시설이 있는 공장동 내 ① 화재·폭발 예방 격벽 또는 위험물 보관시설, ② 위험물 전용 보관함, ③ 공정 내 화재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1호(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호(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4호(인화성액체), 5호(인화성가스)에 해당하여야 하며, 최초 신청시 사업계획서, MSDS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으로 사용량 등을 확인합니다.
- 위험물 전용 보관함의 경우 내화성능, 화재감지·자동소화장치 등 안전조치가 반영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품목은 위험물 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등 타 법령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신청 전 반드시 타 법령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보조금 취소 및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정보 변경 관련>**

**Q4) 투자완료 전, 후 시점에서 사업장 정보변경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후 사업관리(동행)-사업장정보 변경신청으로 정보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소재지 변경은 사업장 전체 이전만 가능하며, 대표자 변경은 법인 사업장인 경우 가능합니다.**

※ (소재지 변경) 이전 주소지에 대한 ❶사업자등록증 및 ❷산재완납증명원

(대표자 변경) 변경된 대표자 명의의 ❶사업자등록증 및 ❷산재완납증명원

(양도양수) ❶사업자등록증, ❷산재완납증명원, ❸포괄양도양수계약서, ❹안전동행 지원사업 준수 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❺중소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및 ❻지급보증보험증권 등

## <5. 지급보증보험증권 관련>

### Q5-1) 지급보증보험의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 지급보증보험증권은 사업장의 귀책으로 인한 정부보조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 정부보조금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 종합지원시스템-심사결과 확인 시 동의(안전동행 지원사업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안전동행 지원사업 서약 불이행 시, 지급보증보험을 통한 보조금 환수

### Q5-2)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결정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보증보험증권 재발행이 가능한가요?

☞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여 변경 승인 후 변경된 내역(결정통보서)을 근거로 변경 가능합니다.

## <6. 사업변경>

### Q6-1) 사업계획 변경 가능한가요?

☞ 사업장의 보조금 지원지급대상자 결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과 같은 작업환경 시설개선도 계획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시 견적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귀책사유(단순변심 등)가 아닌 경우로 제한하며 결정된 보조금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신청 후 공단 승인 시 변경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 후 변경된 보조결정금액이 최종 결정금액이며, 예비선정 대상 점수가 변동되는 변경 신청 건은 승인불가

### Q6-2) 서류·현장평가 중 설비 수량 또는 모델 등 변경이 가능한가요?

☞ 서류·현장평가 단계에서는 설비 수량, 모델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서류·현장평가 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공단에서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신청내용 변경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일 이후,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까지 가능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 결정통보 후>

### Q7-1) 결정통보 후 필수 이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불가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투자 전 반드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 공정개선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사항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 (예시) 건축법, 소방법, 위험물 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 등) 등



#### Q7-2) 사업주교육은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이 결정된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정범위) '24년 1월 1일 이후 ①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교육, ③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경우 인정

☞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 에서 신청 가능하며, 교육신청 및 관련 문의 사항은 ☎1644-2275, 1644-5656 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 <8. 원가검토>

#### Q8) 원가검토가 수행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사업장의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개선을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제출하여 원가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 요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가검토 의뢰 시 가급적 지원 품목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전체 개선 내역에 대하여 하나의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9. 투자완료>

#### Q9-1) 투자완료 시 부적합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결정통보 내용과 투자완료 설비가 불일치하는 경우

☞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투자기한 4개월 + 신청시 연장 2개월)

☞ 투자완료 전까지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 Q9-2) 투자완료 시 세금계산서가 하나의 제작·판매업체가 아닌 다수의 제작·판매업체로 발행되는 경우 어떻게 종합지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상 각각의 설비를 납품한 사업장명과 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총액을 확인 후 총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 Q9-3) 지급된 보조금 금액이 결정통보서 상의 “보조지원 결정금액”과 다를 수도 있나요?

☞ 공단의 투자완료 확인 검토결과, ①실거래금액, ②원가계산(검토)보고서상 검토금액, ③결정통보서의 보조지원 결정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보조지원 확정금액”을 정하여 보조금을 최종 지급합니다.

- 따라서, 실거래금액 등이 보조지원 결정금액보다 작을 경우 최종 지급금액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 부정수급 관련>

### Q10-1) 부정수급이 무엇인지요?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적극적인 속임수나 그 이외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1) 중고품을 신제품으로 도입한 것으로 속여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한 경우

(예시2) 가격 부풀리기 등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현금 또는 현금성 물품으로 돌려받는 경우(일명 “페이백”)

### Q10-2)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공단 보조·지원이 취소되며, 취소 후 최대 5년간 사업참여가 금지되며,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까지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 공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보조·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Q10-3) 타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로부터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에 따라 동일 설비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아울러, 동일 설비에 대해 본 사업의 보조금과 타 기관 융자금의 **합계가 100% 초과인 경우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동일 설비에 대해 본 사업 보조금과 타 기관 융자금 합계가 설비 구입비의 **100%이내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